



어디서 구매하든지 도서·공연 구입비는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?



도서·공연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(매장, 시설, 온라인 웹사이트 등)에서 구매할 경우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
도서·공연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무엇인가요?



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등에 따라 국세청(세무서)에서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중 도서 및 공연티켓 품목을 판매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(한국문화정보원)로부터 도서·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사업자를 말합니다.



도서·공연비 소득공제 사업자,  
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?



도서·공연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확정되면 인증 스티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또한 지역 및 업체명으로 온라인에서 검색 가능합니다. ([www.culture.go.kr/deduction](http://www.culture.go.kr/deduction) 내 '도서·공연비 소득공제 사업자 검색' 참조)

도서·공연비  
소득공제  
사업자 스티커를  
확인하세요~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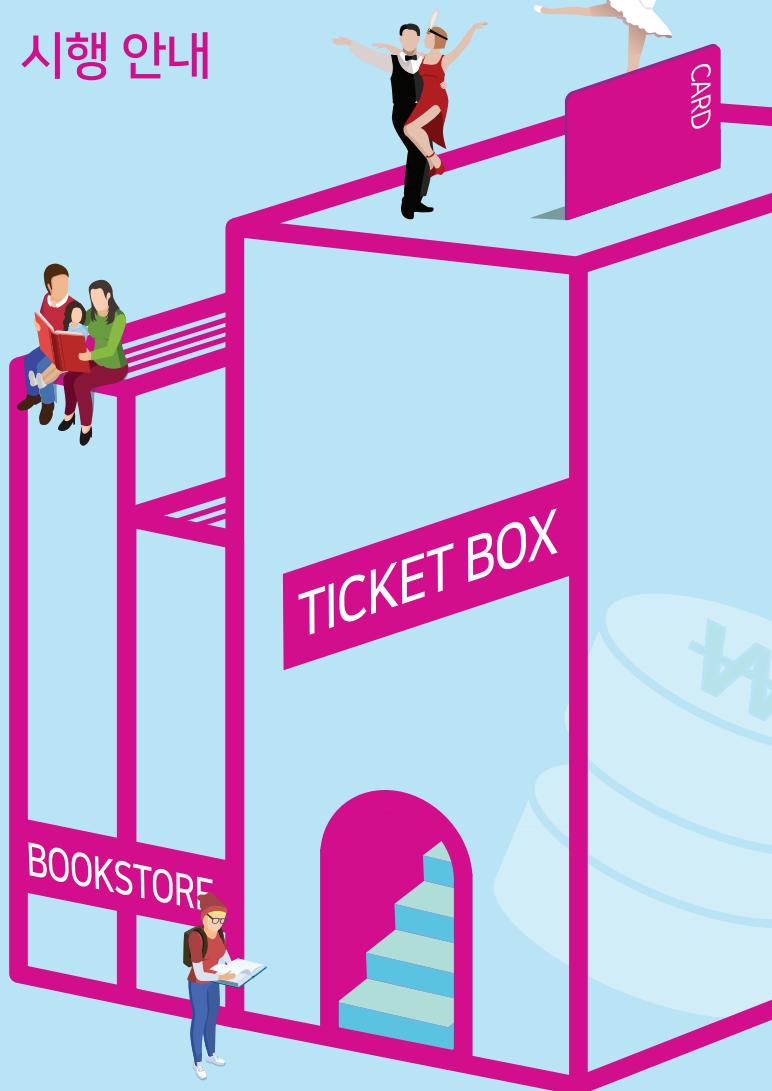


**문의 1688-0700**

평일 9시~18시 (주말 및 공휴일 제외)

# 문화인이 누리는 혜택, 도서·공연비 소득공제

## 시행 안내



책 읽고! 공연 보고!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받고!  
도서·공연비 소득공제 챙기고 알뜰한 문화생활 하세요!



문화체육관광부



국세청

## 도서·공연비 소득공제란?

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 추가공제(최대 100만원),  
공제율은 30%로 적용



구분	기준	개정된 소득공제 내용
공제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신용카드(15%)</li><li>현금영수증, 직불·선불카드 사용분(30%)</li><li>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사용분(40%)</li></ul>	기존 공제율에 <b>도서·공연사용분(30%) 신설</b>
공제액	<p>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= 신용카드+현금영수증+ 직불카드+선불카드+ 전통시장사용분+ 대중교통이용분 <b>도서·공연사용분</b></p> <p>* 공제액=[①의 사용액 - 총급여액의 25%]×[신용 카드15%, 현금영수증· 직불카드30%, 전통시장·대중교통40%]</p>	<p>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= 신용카드+현금영수증+ 직불카드+선불카드+ 전통시장사용분+ 대중교통이용분+ <b>도서·공연사용분</b></p> <p>* 공제액=[①의 사용액 - 총급여액의 25%]×[신용 카드15%, 현금영수증· 직불카드30%, 전통시장·대중교통40%, <b>도서·공연사용분 30%</b>]</p>
한도	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' 소득공제한도(300만 원)+ 전통시장(100만 원), 대중교통(100만 원), 최대한도(500만 원)	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' 소득공제한도(300만 원)+ 전통시장(100만 원), 대중교통(100만 원), <b>도서·공연사용분(100만 원) 한도추가</b> 최대한도(600만 원)

단, 소득공제 가능 도서 및 공연티켓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
## 시행일 : 2018년 7월 1일

시행일부터 도서·공연 사용액에 대해  
**‘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’** 시  
(2019년 1월부터) 적용

### 공제 대상자

총 급여 7,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 
**총 급여의 25%가 초과하는 근로자**



### 공제 대상 도서 및 공연의 범위



**도서**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록사항(저자, 발행인, 발행일, 출판사, 국제표준도서번호 (ISBN, 전자책은 ECN 포함))이 표기된 간행물

\* 종이책, 전자책, 외국발행 간행물, 중고책(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·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 판매자에 의해 다시 판매되는 도서)가 포함되며, 도서 구입비에는 도서 구입에 수반되는 배송료 등도 포함

**공연** 공연법 제2조(정의)에 따라 음악, 무용, 연극, 뮤지컬, 미술, 아동극, 콘서트 등 ‘무대에서 실연하는 공연’의 관람권 및 입장권

\* 공연티켓 구입에 수반되는 예매/취소 수수료, 배송료 등도 포함되며, ‘실연’이 아닌 녹화영상(영화, 방송 등) 등은 제외

\* 문화체육관광부(한국문화정보원)로부터 도서·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곳에서 결제 (오프라인 지점의 경우, 도서·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단말기에서 결제)

\* 국세청에서 도서·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등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도서·공연비로 처리, 확정